

불공정수출입행위 조사 · 신고제도

1. 제도의 개요

□ 정의

- 불공정수출입행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경쟁원리와 거래질서를 침해하여 경쟁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불공정한 수출입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요건

-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수출입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의 법령 또는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프로그램저작권 및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기타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품질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수출 또는 수입물품의 인도, 대금의결제등 수출입계약사항을 계약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당해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을 고의적으로 야기시키는 등으로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다만, 화해 또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 수출입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 · 변조하는 행위, 선하증권 원본이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제출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는 행위
- 수출 또는 수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2.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신고절차

□ 신고

-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무

역거래자, 생산업자, 관련조합, 협회, 운송인 또는 보험업자는 무역위원회에 당해 불공정수출입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 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정해진 특별한 서식은 없으나,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 및 사업내용, 피신고인(불공정수출입행위자)의 주소·성명 및 사업내용,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도 접수는 되지만, 신고인은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그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 신고된 사항은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을 거쳐 서면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되며, 필요한 경우 경찰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인이 신고서류 보완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제재조치

-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시정조치 명령과 행정벌인 과징금 부과가 있습니다.
- 과징금부과의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 무역거래자의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 각호에 규정된 불공정수출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위반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에 따라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게 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무역거래자의 수출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 무역위원회의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제재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고의인 경우	중과실인 경우	경과실인 경우
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행위	과징금 3,000만원	과징금 2,250만원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1,500만원
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과징금 2,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1,000만원
다. 기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과징금 1,000만원	과징금 750만원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500만원

中企 제품 의무구매 기관 확대 9월부터 고유업종 43개 폐지

중소기업청은 2001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기관을 확대 적용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부터 강화되는 중기청의 주요 지원제도는 1월 중 중소기업의 범위를 개편해 복잡한 중소기업 범위를 단순화 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 조정 방침을 정하고 현재 88개의 중소기업 고유업 종종 국내경제의 대외개방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고압가스용기, 컷아웃스위치(2.5kV급에 한함), 고장구간 자동개폐기(25.8KV, 400A, 15KV급에 한함) 등 43개 업종을 9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또 오는 6월부터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해 현행 주식회사 설립요건 발기인 3인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에서 소기업인 경우 발기인 1인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도 가능토록 개정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전자상거래 및 전자적 기업자원관리(ERP) 설비투자 정보화 특화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5%)를 신설했으며, 창업 벤처기업의 법인·등록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던 농특세를 폐지하고,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20%) 대상업종을 현행 7개업종에서 16개업종으로 확대해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의무기관을 확대해 현행 69개 기관에서 79개 기관으로 넓혔다.

이렇게 되면 구매계획액도 지난해 33조6천억원에서 올해 35조7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중기청은 영세유통상 지원을 위해 시장재개발 및 중소유통업 개·보수 자금지원한도를 확대해 시장재개발·재건축자금을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늘렸으며, 점포시설 개선자금을 지난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시장시설 개선 자금도 지난해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해외 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도 확대해 그동안 50개 주요국 인증에서 제품 수출과 관련된 모든 인증으로 늘였으며, 지원한도 금액도 700만원에서 의료기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도를 초과해 지원할 방침이다.

인증획득비용 신청시기도 연 1회 신청 및 선정에서, 연 2회 신청 및 선정으로 기회를 늘리고 51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출규격센터를 설치해 주요국의 최신규격을 확보, 제공할 계획이다.

올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부품·소재전문중소기업 육성에 700억원을 지원하고 수입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차기 핵심부품·소재 개발을 위해 조립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선정, 과제당 최고

10억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e-Biz화 기반구축과 정보화경영 체제 인증제도 도입 및 표준 모델 개발·보급 등을 위해 276억원이 지원되며 이밖에도 중소기업 수출부문에 5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벤처기업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원 300억원,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50억

원이 지원된다.

올 한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은 그동안 보호와 자금 위주의 지원 정책에서 앞으로는 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품질력 강화, 정보화 촉진, 공정 경쟁 여건 및 경영 여건의 개선 등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정책자금 대출금리 0.75% 인하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연 7.5%에서 6.75%로 0.75%p 인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하조치는 '98년 이래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국회 및 관련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인하요구를 반영하게 된데 따른다.

종전 정책자금 대출금리인 7.5%는 시중은행 여신금리 7.84%(2000년 11월 기준, 한국은행 발표)와 별반 차이가 없어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따라서 지난해 국정감사때도 국회 산자위 의원들로부터 인하요구 등 집중추궁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재정경제부가 금년도 1/4분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용자금리를 연 6.5%에서 5.75%로 인하한다고 발표해 중기청의 정책자금 인하요구는 더욱 거세진 것이다.

이번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창업 및 진흥기금내 용자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정책자금 일체로서 세부적으로는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협동

화자금', '입지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등 11개 자금이다.

이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과 '창투사 등 용자금'은 6.5%에서 5.75%로 인하되고, 나머지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은 7.5%에서 6.75%로 인하하게 된다. 그러나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 지원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8.5%에서 7.75%로 운영하게 된다.

중기청은 이번 인하조치로 그동안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1만4,000개 중소제조업체들의 금리부담이 연간 623억원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술적으로 현재 용자사업 대출잔액 8조3,045 억원에 대출금리 인하분 0.75p를 곱하면 622.8 억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도 저금리 혜택에 따라 기존에 정책자금을 쓰지 않던 중소기업도 앞으로는 정책자금을 많이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수계 유지 최종 확정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 154개 단체수의계약지정물품이 올해에도 현행과 같이 유지 존속하게 됨에 따라 전기공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내고 투명성확보를 위한 배정요령등을 개정키로 했다.

전기공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단체수의 계약품목에 대한 축소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전기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체수의 계약품목이 당초 계획대로, 축소됐을 경우 물량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전기공업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고 밝히고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투명성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함은 물론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중에 문제점으로 지적돼오던 경쟁력악화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조합도 “단체수의계약품목이 유지됨으로써

대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체로 판로 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될 때까지 전통을 거듭, 업계의 속을 끓여왔다.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해를 넘길 경우 품목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산자위와 국회법사위,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조합집행부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다.

전기자재를 제조하는 H사의 경영주는 “단체수의 계약품목이 현행대로 유지됨으로써 업계의 한가지 걱정거리를 덜어 버릴 수 있게 됐다”고 전제하고 “언제 또 단체수의 계약품목을 두고 논란이 일지 모르는 만큼 각 기업에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중전기기 설비투자 내년 875억 규모…작년比 63% 증가

2001년 중전기기산업분야 설비투자는 2000년 537억원 보다 약 62.9%가 증가된 875억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가 분석한 내년도 업종별 설비투자계획에 따르면 중전기기 부문은 한국전력의 발전설비 시설투자에 따른 투자자금을 조기에 확대하고

한국중공업의 구매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등 수요기반 확충에 힘입어 2000년에 비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 주고 R&D(연구개발), 산업기반조성, 산업화지원자금 등의 조기집행과 산업기반기금, 중소

기업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등 투자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투자 촉진대책 혜택도 중전기기설비투자 확대에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중전기기업계는 특히 2001년에 울진·영광원자력 발전소 건설, LNG공급 기반 구축 등에 8조5천640억원 규모가 투자될 것으로 분석되는 등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수요기반도 뒷받

침돼 예상보다 설비투자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0년 중전기기분야 설비 투자규모는 관련산업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투자위축을 가져와 작년 1천211억원 규모에 비해 44.7%가 감소한 537억원 규모의 투자에 머무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국내 수출입품목 분류체계 전면 개편

오는 2월말 발표예정인 2001년 1월중 수출입동향(확정)부터는 산업자원부의 새로운 수출입품목 분류체계에 따라 다양한 수출입 동향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88년 제정한 수출입품목 분류기준인 'MTI 기준 수출입품목 분류체계'를 'MTI 21'로 전면 개편하고 무역협회와 협조해 KOTIS 무역통계 프로그램을 수정, 오는 2월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서로 다른 분류체계로 운용중인 수출·수입의 품목분류를 일치시키고, 현행 3대 성질별 분류(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기타)로 세분화 한다. 지금까지는 수출품목은 10대 분류, 수입품목은 8대 분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MTI코드의 HS코드 환원 등 수작업을 요해 매월 수출입동향 발표시 포함시킬 수 없었던 품목별 무역수지의 산출이 쉬워지게 되어 앞으로는 지역별 무역수지와 더불어 섬유류, 기

계류, 에너지관련품목, IT산업제품, 소비재, 중간재(부품·소재) 등 주요 품목별 무역수지도 정기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현행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기준)는 비슷한 종류의 수개의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이다.

그러나 현행 체계상 수출과 수입의 품목분류가 상이해 품목별 수출입 비교가 곤란하고, 성질별 분류(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에서도 총포 등 무기류가 소비재로 분류되는 등 통계왜곡이 불가피하며, '88년 제정 이후, 그 동안의 산업발전 추세 및 품목별 무역추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현재 무역협회 KOTIS 통계 프로그램 수정작업이 진행중이며, 2001년 1월 통계확정치(2월 25일경 발표)부터 적용 예정이다.

다만 과거자료 입력 및 통계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금년말까지 'MTI 21'을 현행체계에 병행해 운용한다(2002년부터는 신체계만 적용).

● 수출입 품목분류 신·구체계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편 (MTI 21)
품목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및 수입통계 이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경우, 수출은 10대, 수입은 8대 분류체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품목 10대 분류 : ① 일차산품 ② 화학공업제품 ③ 플라스틱·가죽·고무제품 ④ 비금속광물제품 ⑤ 섬유류 ⑥ 생활용품 ⑦ 철강·금속제품 ⑧ 전자 및 전기 ⑨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⑩ 잡제품 * 수입품목 8대 분류 : ① 농림수산물 ② 광산물 ③ 화학공업제품 ④ 섬유류 ⑤ 철강·금속제품 ⑥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⑦ 전자 및 전기 ⑧ 기타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및 수입통계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경우, 수출·수입 공히 10대 분류체계로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분류 : ① 농림수산물 ② 광산물 ③ 화학공업제품 ④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⑤ 섬유원료 및 제품 ⑥ 생활용품 ⑦ 철강금속제품 ⑧ 기계류 ⑨ 전기전자제품 ⑩ 잡제품
산업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통계에 대해, 1차산품, 경공업제품, 중화학제품으로 구분 ○ 수입통계에는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분류를 1차산품, 경공업제품, 중화학제품, IT제품으로 분류 ○ 수출 및 수입통계에 대해 모두 적용
성질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통계에 대해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의 3대 분류체계 적용 ○ 수출통계에는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통계에 대해,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기타의 5대 분류체계 적용 ○ 수출통계에도 적용
용도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통계에 대해 통관시 결정되는 기준에 따라 내수용, 수출용으로 구분 ○ 수출통계에는 미적용 	(현행과 동일)

전기사업법 개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한 전기사업법의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전기사업자간의 경쟁도입 및 전력시장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은 지난 7월 2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원회를 거쳐 지난 4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6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현행 전기사업에는 일반전기사업·발전사업·특정전기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개정 법률안

에는 기능별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자들이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기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게 되면 전력공급의 중단이나 품질저하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전기사용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두 번째로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 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전력공급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및 전력수요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한전에 의한 투자가 설비의 과잉·과소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보여온 것에 비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전력시장의 개설·운영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전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력계통의 운영방법과 긴급사태시의 처분 등을 규정했다.

다섯 번째 도서지역의 전기공급 지원사업과 대

체에너지 개발, 전원개발, 기술개발 기타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은 전기 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의 범위 안에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전기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감시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기분야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규제를 담당하게 했다.

신설된 전기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8명의 위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재무회계·분쟁조정·계통신뢰도 등 3개 전문위원회를 운영,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업무와 심의·의결·조사기능 등을 가지게 된다.

또한 개정된 법률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가 늦어져 발전소주변지역지원과 농어촌전화사업 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은 1년 더 연기해 오는 2002년 1월 1일까지 시행토록 수정하고 농어촌전화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시까지 현행대로 한전이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기능별 전력거래의 경쟁성 도입과 전기의 수급조절문제, 벌칙사항 등의 규정을 확실히 해 둠으로써 전기사업에 대한 범위와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자부, 2003년까지 4,500억 투자 총 에너지 수요 2% 대체에너지로

산자부는 오는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 공급비중을 현재 1%에서 2%로 확대하고 국내 총에너지 수요의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종합대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대체에너지 개발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오는 2003년까지 4천5백 억원을 투자하고 2010년까지 총 1조8천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폐기물 등 핵심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보급형 제품의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2003년까지 500억원을 투자하겠

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오는 2010년까지 1조8천억원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비 지원을 통해 선진국의 40~75%인 기술개발 수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한편, 조기실용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태양광의 경우 단결정 및 다결정 Si태평양전지 등 핵심기술이 개발된 상태이므로 이를 주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형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풍력발전은 중규모(750kW) 발전시스템의 국산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